

# 거버넌스위원회 규정

2020. 10. 27.



### 제 1 조 (목 적)

- ① 이 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거버넌스(Governance)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)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.
- ②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의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 제 2 조 (구 성)

- ① 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의 임기는 사외이사 선임일로부터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.

### 제 3 조 (위원장)

- ① 위원장은 매 정기주주총회 이후 첫 번째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선임하며,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이사회에 상정될 안건을 검토할 경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
- ③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# 제 4 조 (소 집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안건 등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 제 5 조 (결의방법)

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## 제 6 조 (사전검토 사항)

위원회는 회사 주요 의사결정사항에 대한 투명한 검토를 통해 이사회중심경영원칙을 실행하고 주주권익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검토대상은 아래와 같다.

1. 『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』 및 『상법』에서 이사회 승인 사항으로 정한 특수관계인간 거래
2. 투자 및 기획관리 사항
  - (1) 당사가 발행주식 총 수의 50%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로서, 출자액의 규모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1 이상의 회사의 설립, 합병, 분할, 해산, 주권상장 및 코스닥상장
  - (2) 자기자본의 100분의 1 이상의 타 법인에 대한 출자 및 출자지분의 처분
  - (3) 자기자본의 100분의 1 이상의 자산의 취득
  - (4) 자기자본의 100분의 1 이상의 신규 시설 투자, 시설 증설 또는 별도 공장의 신설
  - (5) 회사의 합병/분할 등에 관한 사항
  - (6) 회사의 해산 및 회사의 계속
  - (7)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영업의 양수 또는 양도
3. 회계 및 재무관리 사항
  - (1) 중간배당, 주식배당
  - (2) 준비금의 자본전입
  - (3) 신주의 발행
  - (4) 정관에 따른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한 신주 발행에 관한 사항
  - (5)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
  - (6) 자본 감소
  - (7) 주식의 액면분할 및 병합

- (8)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 등의 체결 및 해지
  - (9) 주식의 포괄적 교환, 주식의 포괄적 이전
  - (10)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, 이익참가부사채, 교환사채 등 특수사채의 발행사항 결정
  - (11) 회사 주요자산(장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300억 원을 초과하는 자산)의 담보제공 또는 처분. 단, 출자지분 처분의 경우 본 조 제2항 제(2)목에 따른다.
  - (12) 300억 원을 초과하는 국내외 차입계약(1년 이내의 단기차입 제외) 및 300억 원을 초과하는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
  - (13) 이익배당한도 내의 주식소각
4. 기타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경영 사항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부의하는 사항

#### 제 7 조 (토의사항)

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의할 수 있다.

1. SKMS 등 SK그룹의 경영원칙에 관한 사항
2. SK그룹의 주요 경영 전략에 관한 사항
3. 윤리경영 실천 방안
4. 기업의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활동
5. 회사의 연간 경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
6. 중장기 전략
7. 산업별 사업 추진 전략
8.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현안 등 위원장이 토의를 요청한 사항

#### 제 8 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

-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인사를 출석하도록 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써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## 제 9 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위원과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## 제 10 조 (규정의 개정)

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## 부 칙

2016년 3월 18일 제정

### 제 1 조 (시행일)

본 규정은 201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2018년 2월 6일 부분 개정

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18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2020년 10월 27일 부분 개정

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2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